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22195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

1. 강순문

2. 고용택

3. 김순덕

4. 김용광

5. 원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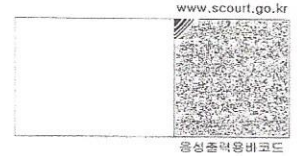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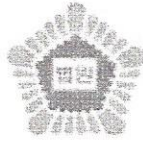
6. 조태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이사 황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이정환, 김형로, 구교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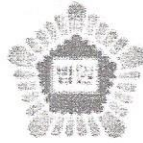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인사평가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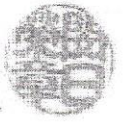
김 신

김 신 

주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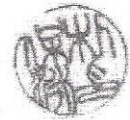
대법관

민일영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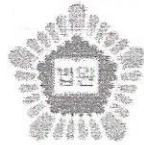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권순일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등본입니다.

2015. 6. 24.

대법원

법원주사보 이상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